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32 발의연월일: 2025. 2. 18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김한규 · 김태년

박지원 • 박홍배 • 박희승

정동영 · 정성호 · 조계원

조정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후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.

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13개 시·도 교육청에서는 자 치법규인 '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'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해 당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.

이에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,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·도교육청 내에 "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"(이하 "위원회")를 설치·운

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운영 방안을 법제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함.

또한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·도 교육청 산하에 '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'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위원회에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교육부에 보고 및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3 신설 등).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제44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13. 제44조의3에 따른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체적·정신 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제4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4조의3(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) ①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의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.
 - 1.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 원에 대한 직무 수행 지속성 여부에 관한 사항
 - 2. 제1호에 따른 판단 결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교육 공무원에 대한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

- 3. 제1호에 따른 판단 결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재활 또는 치료 등 지원사항
- 4.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 여부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교육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학생 안전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을 명할 수있다. 이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, 휴직기간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준하는 휴직기간을 적용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휴직을 명한 교육공무원의 재활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(이하 "재활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복직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, 교육감은 위원회가 복직하려는 교육공 무원에 대한 복직 및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해 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복직 및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, 재활

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4(결격사유) 다음 각 호	제10조의4(결격사유)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	
없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신체적 · 정신적 건강상의 이
	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
	<u>자</u>
제44조(휴직) ① 교육공무원이 다	제44조(휴직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	
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	
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	
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	
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	
야 하고, 제7호, 제7호의2 및	
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	
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3. 제44조의3에 따른 질환교육
	공무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체적
	•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
	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

② ~ ⑤ (생 략) <신 설>

하는 경우
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 제44조의3(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) ①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의 직무 수행적합 여부를 심의·의결하기위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
 -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.

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의 이 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 수행 지속성 여부에 관한 사항
- 2. 제1호에 따른 판단 결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
 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휴직
 여부에 관한 사항
- 3. 제1호에 따른 판단 결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
 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활
 또는 치료 등 지원사항

- 4.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판단되어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 여부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교육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학생 안전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명할 수 있으며, 휴직기간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준하는휴직기간을 적용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휴직을 명한 교육공무원의 재활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(이하 "재활센터"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 공무원이 복직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, 교육감은 위원회가 복직 하려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복

- 직 및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고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공 무원의 복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복직 및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에 보고하여야한다.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, 재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